#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피델리티자산운용㈜

2. 조치일 : 2026. 10. 28.

3. 조치내용

| 대상 | 내용 |
|---|---|
| 기 관 | 경영유의사항 3건 |
| 임 원 | 해당사항 없음 |
| 직 원 등 | 해당사항 없음 |

4. 조치대상사실

## 가. 경영유의사항

### (1)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

피델리티자산운용㈜(이하 '회사')는 검사대상기간 중 그룹사(A)와 용역거래 등 총 OO건의 특수관계인 거래(거래금액 OOO억원)를 하면서, 「피델리티 그룹 표준 가격 정책(FIL Group's Standard Pricing)」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였으나, 해당 거래 조건이 제3자와의 계약조건보다 우월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하다는 검토가 미흡하다.

**< 조치할 사항 >**

회사는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거래조건의 유·불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

### (2) 이사회 역할 및 운영의 실효성 강화

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5년간 총 OO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, 이사회에서 주요 계약의 체결에 대해 의결한 사례가 없고,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안건에 반대하거나 개인 의견을 개진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며, 안건 보고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등 의사록 작성도 부실하여 회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역할 및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.

**< 조치할 사항 >**

회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,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언자 및 발언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는 등 이사회 역할 및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

### (3)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 강화

회사는 모회사(B)가 마련한「글로벌 보수 정책(Global Remuneration Policy)」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부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*함으로써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(이하 '준법감시인 등')의 보수가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나,

* 검사대상 기간 중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 총 OO회, OOO백만원의 성과보수 지급

평가요소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이 없는 등 성과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, 준법감시인 등의 성과급 지급 관련 구체적 자료의 보관·관리도 미흡하다.

**< 조치할 사항 >**

회사는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·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